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사유

2003. 7.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담당업무가 총무담당주사에서 청사관리 담당주사로 변경됨에 따라 구청사건립기금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변경

2. 주요골자

사하구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출납원을 총무업무 담당주사에서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을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2호)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4.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2003. 7. 1자 사하구 직제개편에 따라 청사관리업무가 총무담당주사에서 청사관리담당주사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항(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금출납원 명칭을 총무업무 담당주사에서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로 바꾸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2003. 12.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